

생활금융특집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자 생활금융법령 손해보험업법 예금금융법 저축은행운영법

제56화

금리인하요구권 운영방식이 개선될 예정입니다.

금융당국과 금융협회는
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
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보완하며
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 통지를 구체화하는 등
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
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Q '금리인하요구권'이란 무엇인가요?

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
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
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
요구할 수 있는 권리

- 18.12월 은행, 보험사, 저축은행, 어신전문금융회사(카드 및 캐피탈사 등)에서 법제화되었고, '22.1월 상호금융회사로 확대되었으며, '22.11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'23.5월부터 새마을금고에도 적용 예정입니다.

Q '금리인하요구권' 어떻게 바뀌나요?

1 소비자에 대한 안내 강화

- 금융회사의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상승한 경우
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가능성이 높음
- 현행 소비자에게 안내되는 신청요건(예상 또는 승진 회)을
확대하여 실제 승인에 활용되는 요건(수신실적, 연체여부 등)을
추가로 안내
- 기존 정기안내(모든 고객에게 연 2회)에 더하여
수용가능성이 높은 고객*에게 추가 안내

→ 수용가능성이 있지만 신청하지 않았던
고객의 신청이 늘어나고,
승인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이 증가하여
수용률이 높아질 수 있음

2 비교공시 개선

- 각 금융협회의 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관련
공시정보 의미 등을 소비자가 보다 쉽고
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
-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, 이자감면액, 인하금리폭 등을
기계대출과 기업대출 각각 유형별(신용, 담보 등)
공시하는 등 공시정보를 세분화

→ 공시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와
활용도 제고, 금융회사별 비교가능성이
높아져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

3 심사결과 통지 구체화

- 현행 표준화된 3가지 불수용 사유 통보내용을 보다
세분화하고,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
정보내역을 제공

→ 금리인하요구 거절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고,
본인의 신용상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게 됨

Q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인가요?

금융회사 시스템 마련 등을 거쳐
'23년 상반기중 완료할 예정